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8.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이며, 청약과열지구&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 공급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2yulim.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 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2순위 청약만 가능)]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7.08.23. 이전부터 계속거주)에서 일반 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8.02.23.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등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 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 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사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하여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 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 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대통령령 제28418호, 2017.11.07.,일부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dongtan2yulim.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는 84A, 96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71, 84B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시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 모형도 및 공급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33334호(2018.08.22)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3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49층, 4개동(4개동 중 1개동 오피스텔, 1개동 업무시설), 총 아파트 3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3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소계		
민영주택	2018000932-01	71.6544	71	71.6544	27.3972	99.0516	43.4828	142.5344	16.3821	44	4	4	8	1	17	27	1
	2018000932-02	84.4985A	84A	84.4985	30.4117	114.9102	51.2772	166.1874	19.3186	132	14	14	28	4	60	72	3
	2018000932-03	84.6065B	84B	84.6065	29.8091	114.4156	51.3427	165.7583	19.3433	44	4	4	8	1	17	27	1
	2018000932-04	96.5843	96	96.5843	34.2959	130.8802	58.6113	189.4915	22.0817	92	0	9	0	3	12	80	2
합 계										312	22	31	44	9	106	206	7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위세대 계약면적 등은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면적-㎡, 원)

■ 기타

• 모든 분양권 매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인 ㈜가람D&C, 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유림E&C,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및 수익자인 ㈜가람D&C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인 ㈜가람D&C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수탁자(매도인)인 ㈜하나자산신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인 ㈜가람D&C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2.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3. 매수인(수분양자)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유림E&C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포함)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인 ㈜유림E&C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및 수익자인 ㈜가람D&C에게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dong2yulim.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견본주택] ■ 분양문의 : ☎ 1600-0668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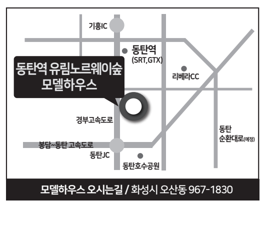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오시는길 / 화성시 오산동 967-1830

유림 노르웨이숲 Yulim Norwegian Woods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분 / 양 / 문 / 의

1600–0668

■시행 하나자산신탁 ■시공 ㈜유림E&C ■위탁 (주)가람